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간 불일치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
○ 연납 공제기간 계산 관련 법과 계산식 불일치	○ 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의 법조문을 계산식과 일치하도록 정비
○ 연세액 용어의 의미 혼용	○ 연세액 개념 규정 정비
○ 10만원 이하 연납 공제액 계산 관련 법과 계산식 불일치	○ 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4항의 법조문을 계산식과 일치하도록 정비

□ 개정내용

- 자동차세 연납 공제기간 계산 관련 조문과 계산식 불일치
 - 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에서 연세액 공제기간을 “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(납부기한 포함)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,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는 “납부기한 다음 날부터(납부기한 불포함)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”로 계산
 - 법조문을 계산식과 일치하도록 “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”으로 개정
- 연세액 개념 규정 정비
 - 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에서 연세액의 의미가 첫 번째에는 연세액이 “연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의 세액”이고, 두 번째는 “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”으로 쓰임